

#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8년 2월 | 2018/02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http://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 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

2018년 1월 24일은 특허협력조약(PCT) 제1장이 발효된 지 40년이 된 날입니다<sup>1</sup>. 1978년 신규 발효된 특허협력조약은 당시 상대적으로 신생 조직이었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일궈낸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전신 기구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무국(BIRPI)<sup>2</sup>의 회원국들에 의해 1970년 4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sup>3</sup>. 이후 특허협력조약은 꾸준히 발전하여 WIPO 최대 국제 지식재산(IP) 출원체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은 처음에 13개국에서 발효되어, 1978년 6월 1일 PCT의 운영이 시작되었을 때 즉, PCT 수리관청들에서 PCT 출원을 수리하여 처리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5개국에서 추가로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PCT 체약국은 152개국입니다.

PCT조약 발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pct/treaty\\_pct\\_14.html](http://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pct/treaty_pct_14.html)

## PCT 뉴스레터 한국어 및 중국어 발췌본 제공

이제 *PCT 뉴스레터*를 온라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발췌본은 2003년부터 PCT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 왔는데, 이제 비슷한 서비스가 한국 및 중국의 PCT 사용자들에게도 제공됩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장은 1978년 3월 29일 발효

2 The 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3 세계 지식재산의 날(World IP Day)이 4월 26일인 이유(참조: <http://www.wipo.int/ip-outreach/en/ipday/>).

발췌본은 모든 PCT 사용자와 관계된 내용과 함께, 해당 언어들이 사용되는 국가의 사용자와 특히 밀접히 관계된 내용도 제공합니다. PCT 세미나일정 및 PCT 수수료표, PCT 계약국 목록 등의 정보는 계속해서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발췌본은 *PCT 뉴스레터* 영문판이 마무리되고 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됩니다. *PCT 뉴스레터*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발췌본은 아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http://www.wipo.int/pct/zh/newslett/index.html>

<http://www.wipo.int/pct/ja/newslett/index.html>

### 캄보디아, 유럽특허 효력 인정

유럽특허기구(EPO)와 캄보디아 정부 간 체결된 유럽특허의 효력 인정에 관한 신규 협정이 2018년 3월 1일 발효됩니다. 이날부터, EPO 회원국이 아닌 캄보디아에서도 유럽특허 및 유럽특허 출원(유럽특허에 대한 지정이 포함된 PCT 출원 포함)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효력이 인정된 유럽 특허 및 출원은 캄보디아 국내 출원 및 특허와 동일한 권리 및 법적효과를 부여받게 됩니다. 해당 협정의 체결로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특허를 자국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가 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president-notices/archive/20180209.html>

<http://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official-journal/information-epo/archive/20180209.html>

### WIPO 우선권서류 온라인 조회 서비스

PCT 출원인은 인증사본을 직접 제공하거나 인증사본이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우선권서류를 위한 WIPO의 온라인 조회 서비스(DAS)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DAS에서 선출원 사본을 입수하여 우선권서류로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DAS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선출원이 출원된 관청이 DAS 기탁관청이어야 하고,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은 DAS 기탁관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는 2017년 12월 1일부로 DAS 기탁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연구소는 기탁관청으로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권서류를 DAS 오피스 포털(DAS Office Portal)을 통해 업로드하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BR>

## 인도 특허청

인도 특허청은 2018년 1월 31일부로 DAS 기탁관청 및 조회관청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특허청은 기탁관청으로서, 2018년 1월 31일 이후 해당 관청에 출원된 PCT출원을 포함한 특허 및 산업디자인 출원서의 인증사본을, 출원인이 DAS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경우, 우선권서류로 기탁합니다. 그리고 조회관청으로서, 우선권서류 제출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출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제공된 우선권서류를 DAS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das/en/notifications.html#IN>

DAS 참여관청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http://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html)

## PCT 정보 업데이트

### CA 캐나다 (국내단계 진입에 필요한 번역문 내용 및 국제출원 사본 제출)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캐나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공개에 앞서 국내출원을 출원하는 경우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출원서 번역문(해당하는 경우)과 국제출원서 사본이 요구됨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는 PCT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이 국내단계 조기 시작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CA) 업데이트)

### FI 핀란드 (수수료)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인 핀란드 특허청(PRH)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통지했습니다.

실용신안:

번역문 또는 사본 제출 지연에 따른 가산료: ..... EUR 100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FI) 업데이트)

### IB 국제사무국 (이메일 주소)

국제사무국의 이메일 주소 중 하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메일: [pct.eservices@wipo.int](mailto:pct.eservices@wipo.int)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2 (IB) 업데이트)

## KR 대한민국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가능 기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들인 한국세포주은행(KCLRF)과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KCCM)의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세포주은행(KCLRF)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 연구소  
 우편번호: 03080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KCCM)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45  
 유림빌딩  
 우편번호: 03641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L 업데이트)

## RU 러시아 (수수료)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인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국내수수료 면제, 감면 또는 반환 조건의 변경을 통지했습니다. 출원서와 필요 서류가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경우 출원료, 심사료, 회복수수료가 30%씩 감면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 요약 (RU) 업데이트)

## SY 시리아 (관청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시리아아랍공화국 특허청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팩스번호 중 하나가 삭제되었습니다.

관청명:	시리아아랍공화국 특허청 (Ministry of Internal Trade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Protection (Syrian Arab Republic))
전화:	(963-11) 516 11 85
팩스:	(963-11) 516 11 44
이메일:	patentoffice@gov.sy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SY) 업데이트)

## UZ 우즈베키스탄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의 명칭, 우편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 및 홈페이지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청명: 우즈베키스탄 특허청(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위치 및 우편주소: Mustakillik avenue, 59,  
100000, Tashkent,  
Uzbekistan

전화: (998-71) 232 50 50

팩스: (998-71) 233 50 05

이메일: info@ima.uz

홈페이지: www.ima.uz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B1 (UZ)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일본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2018년 4월 1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	ZAR
오스트리아 특허청 .....	ZAR
일본 특허청 .....	KRW
대한민국 특허청 .....	USD

상기 변경내용은 수수료표 I(b)에 나와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T, AU, JP, KR)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PRH), 북유럽 특허기구(노르딕 특허기구, Nordic Patent Institute), 스웨덴 특허등록청,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비세그라드 특허청)**

2018년 4월 1일부터, 유럽 특허청, 핀란드 특허청(PRH), 북유럽 특허기구, 스웨덴 특허청,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비세그라드 특허청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변경됩니다. 변경 후 금액은 CHF 2,059입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EP, FI, SE, TR, XN 및 XV) 업데이트)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 개론 (2018년 1월 제공)**

PCT 조약에 관한 원격학습 기초과정(DL101PCT)의 한국어판을 포함한 PCT 공개언어 10개 언어 버전 모두가 정기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실시허가 가능여부 표시

신청(Licensing availability request)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제11.4장 신설) 작은 편집상의 수정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PCT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며, 전적으로 자기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이해도 및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전체 모듈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해당 과정에 대한 수료증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을 원하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 (한국어판)

### 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

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에 관한 내용(“특허협력조약 발효 40주년” 단락 참조)을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아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ar/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zh/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en/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fr/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de/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ja/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ko/40years/index.html> (한국어)

<http://www.wipo.int/pct/pt/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ru/40years/index.html>

<http://www.wipo.int/pct/es/40years/index.html>

###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 신규 납부 요청서 확인

PCT 출원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출처가 WIPO 국제사무국도 아니고 PCT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처리와도 무관한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해 그간 *PCT 뉴스레터*에서 여러 번 주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IPRS – Intellectual property register services”와 “IPTR – International Patent and Trademark Register”에서도 요청서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서의 예시 및 PCT 사용자들이 WIPO에 제보한 기타 여러 예시, 그리고 추가 전반적인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http://www.wipo.int/pct/ko/warning/pct_warning.html) (한국어)

PCT 출원인 및 대리인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신속하게 모든 PCT 출원을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무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PCT 조약 제21조제2항(a) 참조). 이러한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국제공개의 법적 효과에 관한 내용은 PCT 조약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및 대리인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각자의 조직 내 수수료납부 처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납부 요청을 함께 받았을 발명자에게도 전달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납부 요청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41-22) 338 83 38

팩스: (+ 41-22) 338 83 39

이메일: [pct.legal@wipo.int](mailto:pct.legal@wipo.int)

PCT 출원인, 대리인 또는 발명자(PCT 사용자)가 자국 정부나 소비자 보호 단체를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위의 링크에 나오는 사이트에는 민원제기 시 사용할 제안 문구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정부 부처 및 소비자 보호 단체의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 PATENTSCOPE 검색시스템

### 영상 교육자료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 관한 짧은 영상 자료들이 올라간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tutorial.jsf>

해당 자료들은 PATENTSCOPE 사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조언도 제공합니다. 단 몇 분이면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할 수 있습니다.

- 키워드, 번호, 이름으로 검색
- 복잡한 검색 질의(query) 생성
- 화학정보 검색
- CLIR을 통해 검색어의 유의어 파악 및 관련 번역어 획득
- 결과 목록 해석
- IPC 통계자료 활용
- 전체 PCT 공개출원 조회
- 특허등록포털(Patent Register Portal) 사용
- 특허 관련 동향 파악

- 공개된 서열목록 조회
- 계정 생성

## 유용한 도움말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ISA)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하고,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의 요청 없이 해당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Q: PCT 뉴스레터 2018/01호에 나온 유용한 도움말에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시 선출원에 대해 행해진 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출원인이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출원인이 PCT 규칙 4.12에 따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또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A: 선조사 및 선분류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이 송부 받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7년 7월 1일, PCT 규칙 제23조의2가 새롭게 발효되고 PCT 규칙 제12조의2 및 제4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원된 국제출원에 적용되는 해당 변경사항들로 인해 수리관청들은 특정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선조사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는지와는 관계 없이, 선출원에 대한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란의 항목1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관청은 아래 중 하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선출원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과 동일한 국내 또는 지역 관청에 출원되고 해당 관청이 선출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수리관청은 국제출원 시에 해당 관청에 제공되는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해야 함(국제조사기관이 그 전에는 그러한 사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PCT 규칙 23의2.2(a))
- 국제출원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이 아닌 관청에 출원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수리관청이 아닌 상기 후자의 관청이 선조사를 수행하거나 선출원을 분류했으나, 수리관청이 해당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를 이용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수리관청은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CT 규칙 23의2.2(c))

다만, 신설된 PCT 규칙 23의2.2가 자국의 관련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2016년 4월 14일 전까지)할 기회가 관청들에게 주어졌으며, 일부 관청은 상충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PCT 규칙 23의2.2(b)에 따른 상충 사실의 통지

PCT 규칙 23의2.2(b)에 따라 일부 국가의 관청은, 국제출원서과 함께 제출된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선조사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처럼 선조사의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은, 국제출원이 출원된 수리관청이 PCT 규칙 23의2.2(b)에 따른 유보 조건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아래 국가의 수리관청에만 해당됩니다<sup>4</sup>:

DE 독일  
FI 핀란드  
SE 스웨덴

(PCT 유보, 선언, 통지, 상충 관련 목록 참조: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출원인은 상기 언급된 관청 중 한 곳에 출원하는 경우, 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란의 항목2.2의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수리관청에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결과를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T 규칙 23의2.2(b)에 따른 유보 조건을 두고 있는 위의 3개국 중, 이런 식으로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일은 주로 독일에서 발생 가능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PCT 규칙 23의2.2(e)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바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선조사의 결과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 PCT 규칙 23의2.2(e)에 따른 상충 사실의 통지

PCT 규칙 23의2.2(e)에 따라 일부 국가의 관청은, 출원인의 동의 없이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송부하는 일이 자국의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는 아래 국가의 수리관청에만 해당됩니다<sup>4</sup>:

AU 호주  
CH 스위스  
CZ 체코  
FI 핀란드  
HU 헝가리  
IL 이스라엘  
JP 일본  
NO 노르웨이  
SE 스웨덴

<sup>4</sup> 2018년 2월 1일 현황

SG 싱가포르

US 미국

(PCT 유보, 선언, 통지, 상충 관련 목록 참조:

[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http://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이는, 국제출원이 상기 언급된 국가 중 한 곳의 수리관청에 출원되고 출원인이 국제출원 시 해당 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할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3의 해당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리관청은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관청에 있어, 현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국제출원에 대해 선조사가 수행되었는데 해당 선조사를 현국제출원서에 선택된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국제조사기관에서 행한 경우, 출원인은, 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시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서면 출원시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3의 두 번째 체크박스(□)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수리관청이 선조사 및 선분류의 결과를 해당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출원이 하나를 초과하는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출원인이 선조사 및 선분류 결과를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것에 동의할 자격이 있고 그를 희망하거나 수리관청에 선조사 결과를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지 않도록 요청할 자격이 있고 그를 희망하는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선출원에 대해 관련 정보가 각 선출원 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ePCT, PCT-SAFE, 또는 기타 PCT 온라인 출원 소프트웨어에는 관련 기능이 제공되나,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2 또는 2.3의 관련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의 계속 용지"라고 표시되어 각 우선권주장사항을 나열한 해당 페이지의 복제본을 출원서 서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의무와 관련하여, PCT 규칙 4.12에 따라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조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한 관청에 의한 조사가 행해진 선출원에 대해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행함에 있어 해당 선조사의 결과를 가능한 만큼 고려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이 국제조사기관에 선조사 또는 선분류 결과의 사본을 송부한 경우, 또는 해당 사본이 국제조사기관이 허용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이용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결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PCT 규칙 41.2).

조사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과 관련하여, PCT 규칙 4.12에 따른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시, 대부분의 국제조사기관은 조사를 행함에 있어 선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경우 조사료를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이 PCT 규칙 41.2에 따라 선조사를 고려하는 경우, 즉 출원인이 해당 국제조사기관이 선조사를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PCT 규칙에는 국제조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조사료를 (일부)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음을 유념하십시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국제단계, 5.073B 내지 5.073D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출원서 서식 제7기재란의 계속 란의 항목2의 주석도 참조하십시오.

[http://www.wipo.int/pct/ko/forms/request/ed\\_request.pdf](http://www.wipo.int/pct/ko/forms/request/ed_request.pdf) (한국어)